

선진납세문화로 만드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미래! 稅美來



국 세 청

한국공인회계사회장
대한민국세미디어

수신자 한국공인회계사회장(회원서비스팀장)
(경유)

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안내

1.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금년부터 최초 시행되는 「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」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또한 동 안내자료를 귀 기관 소속회원들에게도 「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」에 대한 이해 및 세무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 임 :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자료 1부. 끝.

국 세 청



국세조사관

김서범

행정사무관

강동훈

국제세원관리당 04/01

당관 정경석

협조자

시행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(2011. 04. 01.) 접수
-133

우 110-705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/ <http://www.nts.go.kr>
전화 02-398-6364 전송 02-739-7063 / rla9601@nts.go.kr / 비공개(5)

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

- * 이 자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자료입니다.
- *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 > 신고납부 > 해외금융계좌신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11. 3

01

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?

-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~36조)

02

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

- ③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.

-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
-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(예: 예·적금계좌)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할 것
-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(예탁증서 포함)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

- ④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.

-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기관
-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

(해외금융계좌 관련자 :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,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)

- 금융투자업관계기관·집합투자기구·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·채권평가회사, 금융지주회사, 외국환업무취급기관·외국환종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

03

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

- ④ 다음의 정보를 「해외금융계좌 신고서」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)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흠택스(www.hometax.go.kr/)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.

- 계좌보유자의 성명·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
- 계좌번호, 금융기관 이름,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
- 공동명의자, 실질소유자,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

04

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

- ④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(과소)신고금액의 10%(2011년 미신고분은 5%)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미(과소)신고 금액	과태료 부과기준
20억원 이하	해당 금액 × 3%
20억원 ~ 50억원	6천만원 + (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× 6%)
50억원 초과	2억 4천만원 + (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× 9%)

05

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

- ④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 36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.

- 단,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의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.